

한국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인권문제 :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복지를 중심으로

조 흥 식(서울대학교)

I. 인권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는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사회복지의 시혜나 자선이 아닌 인간의 권리로서 당연히 사회적 당위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복지권의 개념이다. 이러한 복지권이라는 개념은 Marshall의 시민권 논의로부터 그 이념적·철학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권리로,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권리로 인권개념의 확대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났다.

서구에서 이러한 인권개념의 확대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서구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권리의 개념에 더해 동양의 집합주의(공동체주의)가 적절히 통합된다면 보다 바람직한 인권개념의 보편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한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문제

한국에서 사회복지의 인권론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본적인 생활 곤란과 관련된 생존권 등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

고, 또 다른 하나는 권력이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적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서 부당한 처우의 인권침해가 나타나고 있는 사회배제(social exclusion)와 관련된 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밑바탕에는 한국사회의 취약한 사회복지 수준이 뒤따르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보장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복지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들을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복지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인 인권문제

일반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은 생활환경권, 주거생활권, 의료수급권 등 개인생활에서의 인권침해와 직업생활과 노동권, 교육 및 학습권, 선거 및 참정권 등 사회생활에서의 인권차별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생활에서의 권리침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와 유사한 것으로 형사상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소비자 권리, 신체자유권, 재산권 등과 관련된 차별이 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권리 침해는 경제적·사회적·문화 권리 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노동권, 여성장애인 권리,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향유 접근권, 정보접근권, 지원서비스에서의 차별이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2월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2.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문제

한국에서는 아직도 아동과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과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부모나 성인의 전유물로 생각해 온 관습이 강하며, 또한 연령과 성에 따른 서열상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아동학대, 결식아동, 비행청소년의 처우, 소년소녀가장 문제, 아동을 포함한 가족동반자살 등의 문제가 모두 한국사회의 취약한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중에서 아동학대의 경우를 보면 적극적인 대처는 최근의 일이다.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의 제정, 2000년 7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등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입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아동학대 신고의무화, 응급조치 의무화, 보조인 선임 등의 서비스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현재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인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에 의한 신고비율이 낮은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학대방지를 위한 조치의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아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인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Ⅲ. 실천과제

인권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성격을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것도 그 배경에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실천이 있었으며, 설령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실제 생활에서 사문화되는 경우가 허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그 안의 의사소통 능력의 고양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 한국은 강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시민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국회나 행정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공공결정과정에서 수급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들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 흐름이 바로 오늘날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참여 민주주의의 물결이다.

障害者，児童および青少年福祉を中心に

曹興植(チョ・フンシク 国立ソウル大)

I. 人権と社会福祉

社会福祉と人権の関係は，すべての人は人間らしい生活を営む権利を保持するという前提からはじまる。従って，国と社会はこのような権利を保障する義務があり，国民はこのような権利を保障するよう国と社会に要求できるという意味から生存権的基本権としての社会福祉は施恵や慈善ではない人間の権利として堂々と社会的当為性をもつ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点から社会福祉と人権の関係を上手く表現したのが福祉権の概念である。このような福祉権の概念は,Marshallの市民権論議からその理念的・哲学的背景が求められる。それは，市民的，政治的権利から経済的，社会的権利へと，そして国際的次元の権利へと拡大される人権概念の拡大過程においても変わることなく現れた。

西歐においてこのような人権概念の拡大が，基本的に個人主義を基盤とする一個人と集団間の関係を前提とし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西歐の自由主義的，個人主義的権利の概念に加え，東洋の集合主義(共同体主義)が適切に統合されれば，より正当な人権概念の普遍性に到達できると考える。

II. 韓国の社会福祉と関連する人権問題

韓国における社会福祉の人権論的問題は大きく二つの側面から考えることができる。一つは，基本的な生活困難と関連する生存権など，基本的人権の保障に直結する問題であり，もう一つは，力の弱さにより起因する社会福祉サービスおよび社会的措置の順序と方法における不当な処遇の人権侵害が現れている社会的排除 (social exclusion) と関連した問題である。勿論，このような問題の根底には，韓国社会の脆弱な社会福祉レベルがあり，基本的人権の保障において劣悪な状況にあるといえよう。

次は、韓國の社會福祉領域において發生している人権問題を障害者、兒童および青少年福祉に關連して探ってみる。

1. 障害者の人権問題

一般的に障害者の人権侵害の類型には、生活環境権、住居生活権、医療受給権など個人の生活における人権侵害の類型と、職業生活と労働権、教育および學習権、選舉および參政権など、社會生活における人権差別の類型に分けられる。

個人生活における人権侵害は、市民的・政治的権利の侵害と類似するもので、刑事上の権利、生活施設障害者の権利、家族権、參政権、消費者権利、身体自由権、財産権などと關連した差別がある。そして、社會生活における権利侵害は經濟的・社會的・文化的権利の侵害と關連したもので労働権、女性障害者の権利、生存権、健康権、教育権、文化享有接近権、情報接近権、支援サービスなどにおける差別がある。これのため2007年2月に障害者差別禁止法が制定された。

2. 兒童と青少年の人権問題

韓國では、兒童と青少年を獨立した人格の主体として認めるより、親と成人の專有物として考えてきた慣習が強く、また年齢と性による序列上の低い地位にあるため、基本的人権の侵害が現れる蓋然性が大きい。兒童虐待、欠食兒童、非行青少年の處遇、少年少女家長問題、兒童を含む家族同伴自殺などの問題のすべてが、韓國社會の脆弱な兒童・青少年の人権状況を現しているものである。

このなかで兒童虐待の場合をみると、積極的な對處が生じるようになったのも最近のことである。1998年7月から施行された家庭暴力犯罪の處罰などに關する特例法の制定、2000年7月改正された兒童福祉法などが兒童虐待防止のための制度的介入の基礎を形成した。改正された兒童福祉法によって、虐待された兒童を保護するための緊急電話の設置、兒童保護専門機關の設置、兒童虐待の通告の義務化、応急措置の義務化、補助人選任などのサービスを制度化した。しかし、兒童虐待通告の義務者である關連公務員や専門家による通告の割合が低いことを考えてみると、虐待防止のための措置の實効性はそれほど高くないため、兒童虐待に對する積極的な社會認識が必要な實情である。

Ⅲ. 實踐課題

人權は單純に与えられるものではなく、作り上げていく性格を持っている。歴史的にみても、法に保障されている権利の背景には、その権利を勝ち取るための多くの努力と實踐があったのである。仮に憲法に保障されている人權であっても、實際の生活では死文化となる場合が有り触れているからである。

従って、福祉權を整えるためには市民社會の活性化と其中での意思疎通能力の高揚が必要であり、この点からみると、韓國は強い潜在能力を見せているといえよう。市民社會が成長するに従って、國會や行政がほとんど獨占していた公共決定過程の中に受給者の聲を反映する努力が生まれ、その流れはすなわち現在多くの關心を持たせている參與民主主義の波である。